

# 제 안 설 명 서

【영주시세감면조례증개정조례(안)】

영 주 시

## 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 안 : 244  
번 호 :

제출년월일 : 2002. 3.

제 출 자 : 영 주 시 장

### 1. 개정이유

조례의 설치목적 내용을 보완하고, 관련법령 개정과 명칭변경 등에 따른 조문을 정리하며, 문화재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감면확대 및 경감방법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 2. 주요골자

#### 가. 감면조례 설치목적내용을 보완함(안 제1조)

- 목적 :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 ⇒ 내용추가

#### 나. 전염병예방법 개정과 명칭변경에 따른 조문을 정리함(안 제4조)

- 음성나환자 집단촌 ⇒ 한센정착농원

#### 다. 문화재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감면확대 및 경감방법을 명확히 함(안 제9조)

-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 ⇒ 문화재에 대한 감면

- 문화재보호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도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 경감(신설)

#### 라.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9조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의 개정으로 관련 조문을 정비함(안 제12조)

### 3. 개정조례(안) : 덧붙임

### 4. 신·구조문 대비표 : 덧붙임

### 5. 참고자료 : 덧붙임

가. 등록문화재에 대한 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 표준안(도세정 13400-12101 2001. 08. 06) 1부

나. 2002년도 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 표준안(도세정 13400-13220 2001. 12. 15) 1부

다. 관련법령(발췌) 1부

## 영주시세감면조례증개정조례(안)

영주시세감면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의하여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시세의”를 “따라 시세의”로 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社会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음성나환자집단촌 지원을 위한 감면”을 “한센정착농원 지원을 위한 감면”으로 하고, 동조 본문 중 “음성나환자집단촌에 거주하는 나환자가 과세 기준일 현재 소유하는 집단촌 안”을 “한센정착농원에 거주하는 한센환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는 그 농원 안”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을 “문화재에 대한 감면”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문화재보호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2조제1항 중 “지정을 받은 자와 동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신청서에 첨부한 사업계획서에 포함한 참여자 및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가공업자”를 “육성사업자로 선정된 자와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가공업자”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영위하는”을 “영위한 자가 그”로 한다.

부         체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현 행	개 경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시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u>파라 시세의</u> ..... ..... ..... <u>법령기능을 보</u> <u>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합으로써 지</u> <u>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u> <u>목적으로 한다</u>
제4조(유성나환자집단촌 지원을 위한 감면) 유성나환자집단촌에 거주하는 나환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는 집단촌안의 주거용 부동산(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의 것에 한한다) 및 축사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제4조(한센점학농원 지원을 위한 감면) 한센점학농원에 거주하는 한센환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는 그 농원 안..... ..... ..... ..... .....
제9조(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문화재 등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1. 문화재보호법 제4조, 제6조 내지 제8조와 경상북도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주거용 부동산 2.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주거용 건축물로서 향토문화보호를 위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시장이 따로 지정한 주거용 부동산 3. 문화재보호법 및 경상북도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구역안의 부동산	제9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 ..... ... 1. .... ..... ..... 2. .... ..... ..... 3. ....

〈신설〉

②문화재보호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과세 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제12조(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와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산품생  
산단지 신청서에 첨부한 사업계획서에 포함한  
취업자 및 농수산물가공사업육성법 제5조의 규  
정에 의한 가공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사  
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시  
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  
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당해 납세  
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② ~ ③ <생 락>

#### 제12조(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 제24조(법인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이하 이 조에서 "과밀억제  
권역"이라 한다)안에서 공장 또는 법인  
의 본점(주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을 설치하여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공장 또는 본사를  
매각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  
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  
권"이라 한다)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200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 제24조(법인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① .....  
.....  
.....  
.....  
.....  
영위한 자가 그  
.....  
.....  
.....  
.....  
.....

현 행	개 정 안
그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전액 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은 50퍼센트 를 경감한다.	..... ..... .....
<단서 생략>	<현행과 같음>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관 인 생 각

“위대한 경북을 뛰는 300만”



우702-702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1445-3 /☎ (053)950 - 2311 /FAX (053)950 - 2319  
 세정회계과 과장 서재규 사무관 안기성 담당자 최현찬

문서번호 세정13400-12101

시행일자 2001.08.06 (준영구)

공개여부 공개

(경유)

받 음 시장.군수

참 조 세정담당과장

선 급 접 수	시장 일자 시간 번호	7/6/2001 2001. 8. 07 7/6/2001 7/6/2001	지 시 결 재 공 람	부시장 국장 과장 담당
	심사자		심사일	

제 목 등록문화재에 대한 시.군세감면조례증개정조례 표준안 시달

- 행정자치부 세계13400-186(2001. 7. 26)호와 관련입니다.
- 문화재의 보호를 위하여 2001. 7. 1부터 시행하는 등록문화재에 대한 시.군세감면조례증개정조례 표준안을 복임과 같이 시달하니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음하여 해당 시.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하되, 감면율은 50% 범위내에서 지역실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경상북도○○시(군)세감면조례증개정조례 표준안 1부 글

경 상 북 도 지 사

전결 세정회계과장 7/6/2001

## 경상북도○○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 표준안

경상북도○○시(군)세감면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 제목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을 "(문화재에 대한 감면)"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문화재보호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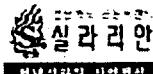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경상북도○○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 표준안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안)
<u>제9조(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u>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문화재등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u>제9조(문화재에 대한 감면)</u> ①----- ----- -----
1. 문화재보호법 제4조, 제6조 내지 제8조와 경상북도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주거용 부동산	1. ( 현행과 같음 )
2.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주거용 건축물로서 향토문화보호를 위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시장(군수)이 따로 지정한 주거용 부동산	2. ( 현행과 같음 )
3. 문화재보호법 및 경상북도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구역안의 부동산	3. ( 현행과 같음 )
<u>&lt; 신설 &gt;</u>	② 문화재보호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관 인 생 력

\*위대한 경복 향기 푸는 300만\*



전년산과의 상한 평균

우702-702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1445-3 /☎ (053)950 - 3712 /FAX (053)950 - 2319  
세정회계과 과장 서재규 사무관 안기성 담당자 최현찬

문서번호 세정 13400-13220

시행일자 2001. 12. 15 (10년)

공개여부 공개

(경유)

발 음 시장.군수

참 조 세정담당과장

선 령	과장	기수	지 시
접 수	일자	2001. 12. 15 오전 08:52	결 재
	시간	12177	당당
처 리 과	세무과	당당	당당
당 당 자	기수	당당	당당
심사자		심사일	

제 목 2002년도 시.군세감면조례증개정조례 표준안 시달

1. 행정자치부 세제 13400-1017(2001. 12. 7)호와 관련입니다.

2. 2002년도 시.군세감면조례증개정조례 표준안을 복임과 같이 시달  
하니 지방세법 제9조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갈음하여 빠른 시일내에  
조례개정을 추진하되, 제23조 및 제25조의 감면기간은 지역실정에 따라 자  
율적으로 결정하시고, 감면조례 개정 추진일정을 2001. 12. 22까지 계출하  
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경상북도○○시.군세감면조례증개정조례 표준안 1부 풀

경 상 북 도 지 사

전결 세정회계과장 *서재규*

## 경상북도○○시(군)세 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북도○○시(군)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증 “의하여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시(군)세의”를 “따라 ○○시(군)세의”로 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한다.

제4조증 제목 “음성나환자집단촌 지원을 위한 감면”을 “한센정착농원 지원을 위한 감면”으로 하고, “음성나환자집단촌에 거주하는 나환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는 집단촌 안”을 “한센정착농원에 거주하는 한센환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는 그 농원 안”으로 한다.

제9조제2항증 “종합토지세”를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증 “지정을 받은자와 동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산품생산 단지 지정 신청서에 첨부한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참여자 및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가공업자”를 “육성사업자로 선정된 자와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가공업자”로 한다.

제15조의1증 “신고”를 “통보”로 한다.

제15조의2증 “제12조제2항”을 “제12조제1항”으로 하고, “신고”를 “통보”로 한다.

제23조증 “(7)년간”을 “( )년간”으로 하고, “(3)년간”을 “( )년간”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증 “영위하는”을 “영위한 자가 그”로 하고 “(5)년간”을 “( )년간”으로, “(3)년간”을 “( )년간”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경상북도○○시·군세감면조례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안)	비 고
<p>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 제7조 제7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 제7조의 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상 기타의 사용 ○ 감면조례 설치목적 내용 고지 로 인하여 ○○시(군)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벌금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정 이 지역사회의 저진화, 빛거지에 이바지 한은 목적으로 한다.</p>	<p>제4조(한센정착농원 지원을 위한 설립) 육성나원자재단총에 기부하는 나원자가 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는 그 집단안의 주거용 부동산(전용면적 제50미터이하의 것에 한한다) 및 축사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p>	<p>○ 감면조례 설치목적 내용 고지 등에 따른 조문 정리 ○ 「전업 농예방법」 개정과 명칭 변경 등에 따른 조문 정리 ○ 중합토지세의 경감방법을 명확히 함.</p>
<p>제9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 (생략) ② 문화재보호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 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50%) 율 경감한다.</p>	<p>제9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 (생략) ② ----- ----- 종합토지세 과세표 층액 -----.</p>	

현 행	개 정(안)	비 고
제12조(농어촌 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지원) ① (1)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산품 생산단지의 설치용 땅은 지와 동현시해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산품 생산단지, 저점신천서에 첨부한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참여자 및 농수산물가공산업 유성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관과 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적격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경우와 개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단서 생략) ②·③ (생략) ④ (현행과 같음)	제12조(농어촌 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지원) ①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9조, 개정 ('99. 2. 5) 및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1조 개정('99. 3. 3)으로 관련 조문 정비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9조(농어촌 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지원) 제31조(농어촌 특산품 생산단지의 설치용 땅은 지와 동현시해령 제31조(농어촌 특산품 생산 단지, 저점신천서에 첨부한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참여자 및 농수산물가공산업 유성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관과 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적격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경우와 개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단서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한 험	개 칭(안)	비 고
<p>제15조의1 (주차전용 건축물 등에 대한 제15조의1(주차전용 건축물 등에 대한 주차장별 제12조 개정으로 소유·제12조 개정) 부가법령에 의하여 주차장을 설치할 의무가 없는 자가 주차장별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설치한 노화주차장으로서 관세기준법 제14조에 의해 용도에 적합 사용하는 주차 비수 20대 이상의 주차전용건축물(근린생활시설 등 주차시설이 아닌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다)과 그 부속토지(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4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 배율을 초과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주차장 설치일 또는 사용승 인시로부터 이후 당해 납세의무가 취소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제14조 종합토지세·도시개发세 및 사업소세(제산화)를 면제합니다.</p>	<p>○ 주차장별 제12조 개정으로 소유·제12조 개정 - 신고 의무 → 통보 의무 - 제12조 제2항 삭제</p>	(선행과 같음)

현·형	개정(안)	비고
<p>제15조의2 (주차전용토지에 대한 감면) 제15조의2 (주차전용토지에 대한 감면) ○ 주차장법 제12조 개정으로 조별 세정 주차장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 → 통보의무 어 <u>신고를</u> 하고 설치한 노외주차장 제12조 제1항 통보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전용토지 제12조 제2항 삭제 와 그 부대시설로서 주차장의 1년간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 의 3이상인 것에 한한다)으로서 파세 기준일 현재 당해 용도에 적절 사용 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주차장 설치일 이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종합토지세와 도시 계획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주차장의 연간수입금액과 부동산가액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다.</p> <p>1.~3. (생략) 1.~3. (현행과 같음)</p>		

현 헌	개 정(안)	비 고
제23조(외국인부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부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 조세 특례 제한법 제121조의2 제4항 및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부자비용에 해당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다음 각호의 기준일부터 (7)년간 전액을 면제하고, 그 나음 (3)년간 50%를 경감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한다.	제23조(외국인부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 지방자치단체 감면기간 적용 설정	1. · 2. (설명과 활용)

부 헌	개 정(안)	비 고
제25조(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세입여체권역(이하 이 조에서 "파업여체권역"이라 한다)안에서 공장 또는 범인의 분점(주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을 설치하여 5년 이상사업을 영위하는 본사·법인·부설기관·그리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200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체납세 및 종합토지세는 그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⑤년간 전액을 면제하고, 다음 ③년간은 50%를 감감한다.	○ 조문 명확화 및 자랑자 단체 감면기간 자율 설정	
(1) ④시 생략) 1. 2. (생략) (2) (생략)	(현행과 같음)	1.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관 련 법 령(발췌)

### 【문화재보호법】

제42조(문화재의 등록) ①문화재청장은 지정문화재가 아닌 건조물 또는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 형태의 문화재중에서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히 필요한 것에 대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할 수 있다.

② <생략>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9조(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의 육성) 시장·군수는 농어촌의 부촌자원과 유휴 노동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이하 “특산단지”라 한다)를 육성할 수 있다.

###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산지가공산업의 육성등) ①농림부장관은 산지에서 가공품의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고자 하는 자(이하 “가공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가공품의 생산 및 개발, 가공품 전문판매점의 설치·운영, 가공품의 수출촉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삭제>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지원의 대상자가 가공품생산을 위한 공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당공장설치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지원의 대상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인가·동의·승인·해제등을 얻거나 신고한 것으로 본다.

1. 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벌채등의 허가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 지정의 해제
2. 산림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의 전용허가 및 동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벌채등의 허가
3. <삭제>
4. 도시계획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등의 허가

5.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의 개발허가
6. 농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7. 수도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수도의 부설인가
8. <삭 제>
9. 초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의 허가 또는 신고
10.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등의 허가
11.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등 승인
-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건축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도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첨용허가 및 동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접도구역에서의 토지형질 변경등의 허가
  2. 하수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의 신고
  3. 건축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사설 건축물의 건축허가 및 신고
- ⑥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 및 제5항 각호의 사항중 그 권한이 위임되지 아니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얻어야 한다.